

#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운영 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 운동의과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운동의과학과 소속 교수들은 운동의과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논문지도

**제4조 (지도교수의 선정)**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하며,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사항은 주임교수가 승인한다.

## 제4장 자격시험

**제5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**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시, 학술연구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논문게재 시 석사 2과목 및 박사 4과목을 면제한다.

**제6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**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며,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며,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**제7조 (외국어시험 과목)**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.  
(예시 :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)

## 제5장 학위과정

**제8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**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은 학위논문으로 한다.

**제9조 (석사학위 과정 취득 자격요건)** 학위논문의 경우 33학점 이수(전공 24학점, 연구지도 9학점) 및 평균 80점 이상으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**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 
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한다.

##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**제11조 (학위논문의 심사)**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
◇ 자격시험 → 학위논문작성 → 예비심사 → 본심사 → 통과

**제12조 (예비발표)** 학위논문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청구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, 이 경우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그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.

**제13조 (논문심사위원)** 석·박사 과정 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며,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.

**제14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** 학위논문 대체 자격이 별도로 없다.

**제15조 (논문대체 제출)** 학위논문 대체 자격이 별도로 없다.

##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6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별첨1] 종합시험 면제

응시과목수	시험 면제 조건		면제과목수
석사 2과목 박사 4과목	SCI급 학술지 논문게재	교신저자, 제1저자	석사 2과목 박사 4과목 면제
	학술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게재		석사 2과목 박사 4과목 면제